제9기 제4회(임시회) 배곧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요일) 15:00~16:00
- 장소: 배곧초등학교 자치실
- 회순
-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개의 선언 5. 안건 심의

- 6. 보고
- 7. 폐회

| | 직위 | 성명 | 직위 | 성명 | 직위 | 성명 |
|-------|----------------|-----|-----------------|-----|------|-----|
| | 학부모위원 임시위원장 | 000 | 학교장 당연직 교원위원 | 000 | 지역위원 | 000 |
| 참석위원 | 학부모위원 | 000 | 교원위원 | 000 | | |
| (11명) | 학부모위원 | 000 | 교원위원 | 000 | | |
| | 학부모위원 | 000 | 교원위원 | 000 | | |
| | 학부모위원 | 000 | 교원위원 | 000 | | |

- 의사 일정(부의된 안건)
 - 1. 배곧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 2. 2023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서(안)
 - 3. 2024학년도 배곧초등학교 문화예술(국악)교사 초빙(안)
- ㅇ 연수
 - 1. 2023학년도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연수

간사(○○○) 지금부터 제9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 또는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위원 추천>

- 간사(○○○) 다수에 의해 추천된 ○○○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안녕하세요? 학교장 ○○○입니다.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 이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 학교 축제했는데 어떠셨어요? 작년과 다르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고, 학년별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축제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알찬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다음은 개의 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5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안 배곧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안녕하세요? 생활인권부장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항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를 보시겠습니다.

| 조항 | 유형 | 현행 | 개정안 | 근거, 사유 |
|-------------------------------|----|--|--|----------------------------------|
| 제2장 | | | 제3장 학생생활지도 삭제 | |
| 학생생활지도 | 신설 | 제3장 학생생활지도 | 및 제2장 학생생활지도 |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특례 반영 |
| 내용 신설 | | | 신설 | |
| 제1장 제5조 | | | 제1장 총칙 제5조 (교육3 | 2022학교생하이라그저 오여 메뉴어 그저 |
| 교육 3주체의 | 신설 | (교육 3주체의 책무) 없음 | | 2023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규정 |
| 책무 | | | 주체의 책무) 내용 추가 | 개선안 반영 |
| 제35조 | | 제35조 7항 표현물 배포 시 | | 2022학교생하이라그저 오여 메뉴어 그저 |
| 학생자치회 | 삭제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 해당내용 삭제 | 2023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규정 |
| 권리 및 의무 | | 받도록 한다. | | 개선안 반영 |
| 제35조 학생자치회 권리 및 의무 | 변경 | 3항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항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23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규정 개선안 반영 |
| 62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 <u>송</u> | 신설 | 62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내용 없음 | 제62조(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내용 추가 | 2023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규정 개선안 반영 |
| 조항 번호 순연 | 변경 | - | 신설, 삭제, 변경으로 인한 이후 조항 번호 순연 |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특례 반영 |

9월 1일 고시가 시행이 되면서 교사회에서 먼저 9월 15일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아이엠스쿨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변경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 위원,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과 함께 10월 12일에 개최하였고, 그 결과지금 보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미리 보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다 읽지는 않고 3쪽과 4쪽에 나와 있는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추가, 변경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사(○○○) 3쪽과 4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부모위원(○○○) 분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교사(○○○)

[제10조 제7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제3호 지도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단위 수업 시간 내 일부)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 |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 교과서 읽기 |
|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단위 수업 종료 시 | | |
| | | ③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욕설. 폭행 등 위협적 행위) | 까지) |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
| 제4호 지도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읽기 및 요약 등 과제 부여 |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교정실 등 교감 지정 장소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여건에 따라 시간대 | 별로 교직원이 분담히 | 는 방식 등을 |

네. 제3호 지도 가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로 분리하고, 제3호 지도 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에서 지도 가능한 선생님이 단위 수업 종료 시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제4호 지도 장소도 나와있습니다. 다음 표는 학생이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다른 장소로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제12항에 대한 학칙 규정]

| | 요건 | 분리기간 분리장소 | | 분리방법 | | |
|---|---|-----------|--------------------|---|--|--|
| 1 | 제10조제12항의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 □ Fu/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판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가져가도록 안내 | |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 교무실 등 | ·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3일 |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학생들에게도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세요.

교사(○○○) 네. 학생들에게 이미 안내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더 담임 교사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추가 질문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안 배곧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2안 2023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서(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6급(○○○) 안녕하세요? 행정실 ○○○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추경 이후 신규 배정된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특 전입금 추가 편성하였고, 초등 기본운영비 중 과밀학급 3학급 경비 중 6개월분을 지원받아 반영하였고, 정리추경으로 수익자부담경비 3~6학년 현장체험학습비 및 유치원 외국인방과후과정운영비 감액 반영, 각 부서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근로복지공단 휴업 급여 및 행정 활동 수입 자체 수입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 천원)

| | | 세입 예산 | | | | | |
|----------|-----------|-----------|---------|-----------|-----------|---------|----|
| 구분 | 경정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비교증감 | 경정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3차 추경 | 3,635,832 | 3,481,506 | 154,326 | 3,635,832 | 3,481,506 | 154,326 | |

2023학년도 3차 추경 세입 예산 요약

예산구분 : 3차 추경 (단위: 원)

| 과 목 | | ク ト ᄎッ゚ デ/の \ | 충거에 |
|---------|----------------------|--|-------------|
| 항 | 원가통계비목 | 산출기초(원) | 추경액 |
| 교육경비 | 미보조금 | | |
| |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보조금 | (성립전)2023. 지역교육현안 제안사업비 | 12,500,000 |
| |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보조금 | (성립전)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시범사업 조성비 | 45,500,000 |
| 교육비특 | 특별회계전입금수입 | | |
| | 학교운영비전입금 | (초)기본운영비 중 (신설) 과밀 3학급 지원비(2023. 9월-2024.2월): (2,268,000원*3학급)÷2(6개월분)=3,402,000원 | 3,402,000 |
| | 목적사업비전입금 | (성립전)2023.늘봄학교(2학기 초1) 운영비외 15건 | 136,509,000 |
| 기타이전 | - ^년 수입 | | |
| 기타공공지원금 | | (성립전)(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5,696,000원*1교= | 5,696,000 |
| 학부모부 | | | |
| | 현장체험학습비 | 3~6학년 현장체험학습활동비 | -50,996,000 |
| | 누리과정비 | (유)외국인방과후과정운영비 | -1,350,000 |
| 행정활동 | 동수입(자체수입) | | |
| | 자산매각대 | 물품매각대금: 360,000원*1회= | 360,000 |
| | 이자수입 | 예금이자수입:2,634,000원*1회= | 2,634,000 |
| | 기타행정활동수입 | 시설공사 후 공공요금수입: 70,070원*1회= | 71,000 |
| | 세입합계 | | 154,326,000 |

행정6급(○○○) 2023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출 주요 사업 설명서

(단위: 천원)

| 번호 | 세부사업 | 세부항목 | 산출기초 | 기정 예산액 | 증감액 | 추경사유 |
|----|--------------|---|-------------------------|-----------|--------|---|
| 1 | 학교급식 운영 | 조리실무사 인건비 | 산업재해보상 보험휴업급여 | 2,352 | 5,696 | 1.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예산에 반영함 2. 증액 합계: 5,696,000원 (세출 P.8 참조) |
| | | | 사무 용품 비 | 0 | 400 | |
| 2 | 교과활동 지원 | (시보조) 지역교육현안 | 미니자동차 코딩교육 강사비 | 0 | 2,800 | 1. 사업의 필요성: 마을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및 코딩 교육 실천(코딩 학습을 통한 사고력 증진 및 이론과 실습이 융합된 |
| | | 제안사업비 | 교재인쇄비· 재료비· 학생간식비 | 0 | 9,300 | 코딩 기술 습득) 예산 지원금 반영함 2. 증액 금액: 12,500,000원 (세출 P.11 참조) |
| 3 | 교과활동 지원 | (시보조) 시흥형 마을교육 특구 시범사업 조성비 | 일반수용비 | 0 | 45,500 | 1. 사업의 필요성: 마을과 학교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실행형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행복 배곧도시 실현(학교와 지역 연대를 통한 마을교육협의체 운영으로 배곧 마을교육 특구 조성) 예산을 지원받아 반영함 2. 증액 금액: 45,500,000원 (세출 P.11 참조) |
| 4 | 방과후 학교 | <u>늘봄</u> 학교운영 | 교재교구비 (2개 교실) | 0 | 4,600 | 1. 사업의 필요성: 1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시작 전 공백으로 갈 곳없이 방치되는 학생 관리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요구가 반영되어 지원된 |
| | 운영 | | 늘봄 협의회비 | 0 | 1,000 | 예산을 반영함 2. 증액 합계: 5,600,000원 (세출 P.17 참조) |
| 5 | 교육환경 개선 | 기타교육 환경개선 | 유치원 옥상 방수 | 52,305 | 47,585 | 1. 사업의 필요성: 옥상 텃밭 조성 이후 조금씩 새던 천정이 점점 더 유치원 유희실과 교실 까지 새고 있어 형광등을 떼어 놓고 수업을 할 정도여서 옥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고 방수 공사가 필요함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반영함 2. 증액 합계: 47,585,000원 (세출 P.20 참조) |
| 6 | 학교시설 장비유지 | 시설관리 용역 | 2023.기계설비 유지관리비 | 11,470 | 5,500 | 1. 사업의 필요성: 본교는 건물 연면적 13,634㎡ 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1회) 및 유지관리 점검(반기별 1회 이상)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반영함 2. 증액 합계: 5,500,000원 (세출 P.22 참조) |

임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안 2023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3안 2024학년도 배곧초등학교 문화예술(국악)교사 초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감(○○○) 안녕하세요? 교감 ○○○입니다. 본교는 전통예술단 가야금부, 취타대, 풍물부 3개 부서를 시흥시청과 경기도교육청 2,3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교감(〇〇〇) 더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전통예술교육을 활성화에 기여할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전통예술단 운영 및 지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자기고 책임감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에 온 2024.3.1.자 임용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에 의거하여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선생님들 의견 수렴한 결과 국악예술 분야 교사를 초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2022년 3월 1일자로 자율학교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의 30% 이내 관내와 관외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국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1명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초빙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전통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초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역 (범위) | 초빙요건 | 초빙 교사수 |
|------------|---|-----------|
| 국악 | 1. 본교 국악예술단 (풍물부, 취타대, 가야금부) 중 1개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 |
| 교육 | 또는 직접 지도가 가능한 교사 | 1 |
| (관내•관외) | 2. 문화예술(국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사 | |

기본 자격요건 및 인사 관련 사항은 2024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에 따르고 모집 공고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11월 6일 월요일부터 11월 9일 목요일까지 서류를 지참하여 학교로 직접 내방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용희망서, 교육경력 및 주요 교육활동 실적, 초빙교사 요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NEIS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본교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인사자문위원회(교직원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 \Rightarrow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Rightarrow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Rightarrow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 인사위원회 심의(교육지원청)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장)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교육청 소속 선생님만 가능한가요?

교감(○○○) 네. 반드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2015년 8월에 개교를 하면서 2016년 3월 1일부터 초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전통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인적자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국악학교도 진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감(○○○) 중학교와 연계가 되다 보니 우리 학교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기초를 다지고 중·고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생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교감(〇〇〇)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특기가 있으신 선생님이 지도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공고를 해도 적격자가 없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추가 질문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안 2024학년도 배곧초등학교 문화예술(국악)교사 초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2023학년도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〇〇〇) <2023학년도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연수 실시 후 등록부, 서약서 서명>

임시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겨저 | λ | ᅡ하⊦ |
|------|------------------|-----|
| ´큰´ö | / ` ' ' ' | ~ |

| 순번 | 내용 | 결과 | 비고 |
|----|---|-------|----|
| 1 | 배곧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 원안 가결 | |
| 2 | 2023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서(안) | 원안 가결 | |
| 3 | 2024학년도 배곧초등학교 문화예술(국악) 교사 초빙(안) | 원안 가결 | |
| 4 | 2023학년도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연수 | 연수 실시 | |

출석위원 학부모위원: ○○○, ○○○, ○○○, ○○○

(11명) 교원위원: ○○○, ○○○, ○○○, ○○○

지역위원: ○○○

기록자 간사: ○○○

(1명)